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

(정기)

- 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·평가)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6조(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)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하며.
- 3. 아울러 평가불가 기관과 평가결과가 '미흡'인 일부 지표에 대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통보 평가지표

<시설> 시설기준, 인력기준, 식품위생관리, 감염병관리, 노인인권보호 <주야간보호·단기보호> 시설기준, 인력기준

※ 등급표기 방법

- 정기평가: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 실시

- 수시평가: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등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 실시

- 평가등급(5등급):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(최우수), B(우수), C(양호), D(보통), E(미흡)

(주야간보호) 시군구: 울산광역시 북구

장기 요양 기관명	징)기요양기관 기호	급용류	점수 (등급)	기관 운영	환경 및 안전	수급자 권리보장	급여제 공과정	급여제 공결과	가점
			주야간보 호	93.85	17.5	20.75	11	30	14.6	0
				정기 A						
	평 가	시설기준								
	지표	인력기준								
명촌노 인복지 센터	23120000108		주야간보 호	90.3	18.75	19.75	12	26.75	13.05	0
				정기 A						
	평 가 지 표	시설기준								
		인력기준								
	23	3120000100	주야간보 호	82.1	14.75	19.75	8.5	26.5	12.6	0
				정기 B						
	평 가_ 지표	시설기준								
		인력기준								

정강 기관명 장기요양기관	가점 0 0
33120000058	
장기 B 17 20.75 7.25 24.75 13.6	
표 인력기준 23120000084 주야간보호 76.85 16.25 21.25 8 18.25 13.1 가노인 공지센 가지 및 인력기준 20.05	0
표 인력기준 23120000084 주야간보호 76.85 16.25 21.25 8 18.25 13.1 가노인 공지센 가지 및 인력기준 20.05	0
23120000084	0
강동재 가보인 복지센 가 지표 인력기준	
터 지 표 인력기준	
표 인력기준	
33120000070 주야간보 78.05	0
늘해랑 노인주 라보호 건보호 기	
표 인력기준	
33120000072 주야간보 75.85 16.75 15 7.5 22.5 14.1	0
Ⅰ	
연암재 가노인 복지센 터 기가지	
표 인력기준	
23120000110 주야간보호 58.61 9 13.25 7 17.25 12.11	0
한결노 인주야 간보호 센터 지	
지표 인력기준	

2024년 3월 5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람들의

장기요양기관 평가불가기관 통보서

(정기)

(주야간보호) 시군구: 울산광역시 북구

연번	장기요양기관명	장기요양기관기호	급여종류	평가불가사유
1	밝은미소재활실버케어	23120000106	주야간보호	폐업

2024년 3월 5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

